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가경정 제2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구 분	세입ㆍ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합 계	2,136,656,607	64,099,698
일반회계			1,604,367,789	48,131,034
특별회계			532,288,818	15,968,665
	짐0	기업특별회계	297,863,527	8,935,906
		상수도사업	85,334,296	2,560,029
		하수도사업	212,529,231	6,375,877
	기타특별회계		234,425,291	7,032,759
		공유재산관리	86,844,998	2,605,350
		의료급여기금	8,222,370	246,67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824,000	54,72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1,252,251	37,568
		교통사업	54,742,177	1,642,265
		철도건설사업	5,983,761	179,513
		폐기물처리시설	5,549,609	166,488
		도시재정비촉진	1,303,027	39,091
		도시개발	19,674,689	590,241
		기반시설 설치	4,539,490	136, 185
		문화시설건립	29,250,000	877,500
		도시재생	15,238,919	457,168

-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 제 4조 2019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 제 5 조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51,297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3,851,297천원
 - (2)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000,000천원
- 제 7조 201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7,2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